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등)

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67조제4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안 별표 6)

보유차고 면적(대당 최저면적) 기준(현행, 승용자동차 : 13㎡~16㎡ 등)을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하고 5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임대한 경우 경감비율(현행, 70퍼센트)을 관할관청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라.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대상을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안 제1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1. 4. ~ 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바. 보조금의 지급
-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일이”를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등록일이”를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변경하는”을 “변경하거나 별표 6에 따른 차고 면적이 증가하는”으로 한다.

제67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93조의2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소형 승합자동차.

별표 6 제2호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별표 6 비고 제2호나목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를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3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중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내용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차고의 위치 및 규모					
	일시 상주 자동차 대수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대)	승합자동차(대)	특수자동차(대)	계(대)
		상주기간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한정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17조(한정면허)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u> ② -----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u>

③ ~ ⑦ (생략)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한다)</u>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u>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u> <u>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u> <u>다. 서비스의 수준</u> <u>라. 면허기간</u> <u>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u> <u>바. 보조금의 지급</u> <u>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u>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3. -----

등록일, 길이, 너비가 -----

4.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생략)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
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
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
차매매계약서

나. (생략)

② ~ ⑤ (생략)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2. (생략)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
용 자동차의 변경(제67조에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등록일, 길
이, 너비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
획 변경신고)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u>변경하</u> <u>는</u>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 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 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 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 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 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 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	----- <u>변경하</u> <u>거나 별표 6에 따른 차고 면적</u> <u>이 증가하는</u> -----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 류)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u> <u>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u> <u>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u> <u>다)</u> 5. <u>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u> <u>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u> <u>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u> <u>다)</u>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 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 ----- ----- ----- ----- -----
---	---

